

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2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술지원과장 최종래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귀농·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함.(안 제1조)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」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인용 문구 변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 개정(안 제4조)
- 귀농·귀촌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항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귀농·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농어업”(이하 “농업”이라 한다)이란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4. “귀농어업인”(이하 “귀농인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귀촌인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서로 뽑는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

“인력육성담당 주사”를 “귀농귀촌담당으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귀농·귀촌인 유치

제4조제2호 중 “자격”을 “귀농·귀촌인 지원 대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의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귀농·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

제10조제6호 중 “필요한”을 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